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8. 3. 21 선고 2017가단2891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전 문

원고케이비부동산신탁주식회사

피고1. A

2. B

변론 종결무변론

판결 선고2018. 3. 21.

주 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상주등기소 2006. 8. 28. 접수 제18761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 중,

가. 피고 A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2. 10. 25. 접수 제22658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나. 피고 B은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등기계 2012. 10. 25. 접수 제22659호로 마친 근저당권이전등기에 대하여,

각 2016. 10. 26. 변제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판사황성욱

별지